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안내

우리조합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조합에서는 회원 여러분께서 인터넷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안내 |

- 사 유 명칭 변경, 항목 추가 및 세부사항 명시 등
- 개정내용
 - 명칭 변경 : “개인정보 취급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항목 추가 :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 세부 명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위탁처 등(붙임참조)

| 이용약관 시행 안내 |

- 시행일자 2014년 7월 18일
- 사 유 기존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동일하던 이용약관을 가입·탈퇴, 회원정보, 서비스, 저작권, 의무·책임 및 기타 사항 등으로 전면 개정
-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조합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조합의 가입 및 업무거래 등 민원사무 처리
2. 금융·보증사고 조사, 분쟁해결 및 채권추심
3. 신용평가, 신용 관련 통계모형의 개발 및 분석
4.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및 회사 일반 사무처리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
6. 기타 정보주체가 동의한 수집 및 제공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 제6조 및 제2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보존의 필요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조합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조합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
항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신용도 판단정보 등

2. 공공기관 및 건설관련협회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교통부, KISCON 등
목적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정책 및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3. 조합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무제휴사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	손해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단체
목적	공제관련 업무, 신용도판단 및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계약의 목적 이행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계약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4. 그 외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	정보주체가 제공 요청한 기관, 단체, 또는 자
목적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제공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에 한함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조합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조합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하고 있

으며 조합이 현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받는 자	서울신용평가(주), 나라신용정보 등
업무의 내용	채권추심 등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조합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 요구
3.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각 지점 또는 영업소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조합은 이에 대해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합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조합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조합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조합원 : 조합원번호(아이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주소

- 비조합원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조합원 : 홈페이지,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 비조합원 : 회사명, 부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2. 업무거래, 신용평가 등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담보제공 현황 등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 선택항목 : 상기 항목 외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조사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금융거래, 공사실적, 기술자격, 보유 부동산 및 재산세 납세 등)
- 3. 기타 업무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재산사항 : 담보제공 시 재산정보 등
 - 은행계좌정보 등 : 보증금청구·심사·지급 관련 정보 등
-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조합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

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
-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출입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조합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직 책	실장	차장/정보지원팀장
성 명	신동철	정용훈
전화번호	02-6240-1060	02-6240-1040
팩스번호	02-6240-1069	02-6240-1049
이메일주소	dong12@seolbi.com	hoon22@seolbi.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조합의 업무거래(또는 민원 사무)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02-3150-2659
(www.netan.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합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법 제25조 제1항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지하주차장	주차시설	1대
지상주차장	주차시설	2대
1층 후문	출입통로	1대
2층 현관	로비	2대
4층 복도	로비	1대
5층 복도	로비	1대
계		8대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관 리		연락처
총무부	책임자	총무부장	02-6240-1010
	관리자	유일만	02-6240-1014
		이춘배	02-6240-1085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조합 총무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

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조합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조합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할 것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방침 시행당시 종전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방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

홈페이지 회원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조합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조합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및 귀하의 서비스 이용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조합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조합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조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조합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조합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이하 “ID”라 한다) : 이용고객의 식별

-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조합이 부여하는 다섯자리의 숫자(조합원번호, 예: “01234”)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 ID의 일치여부 확인하고 온라인상 자신의 비밀번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조합 홈페이지 회원 등록상태를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회원가입의 성립 및 탈퇴) ①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조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 및 약관 동의 후 조합이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가입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3.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조합 홈페이지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제5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해 보호됩니다.

② 조합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조합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 수사상의 목적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조합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시기 바랍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조합 홈페이지의 신청 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조합 홈페이지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조합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조합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지) ① 조합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③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조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조합은 귀하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조합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조합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조합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의 정보가 정확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 스팸메일, 불법 다단계 및 기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범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 타

제11조(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 조합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면책조항)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

- 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3.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또는 이메일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
5.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손해 및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재판관할) 조합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당시 종전의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 📍



조합원과 가입절차

I.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조합에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총족좌수 이상 출자
- 기타업종 ⇒ 1좌 이상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등급별 예치 금액

구 분	CCC등급	CC등급	C등급	비 고
예치좌수	43좌	48좌	54좌	예치금액 = 예치좌수 × 좌당지분액(938,310원)
예치금액	40,347,330원	45,038,880원	50,668,740원	

| 참고사항 |

- 신용등급별로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금이 결정되며, 동 금액을 예치함과 동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의2호의 근거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존 조합원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예치금액은 <Ⅵ.보증가능금액확인서 편>을 참고 바랍니다.
- 좌당지분액은 매년 12월말 결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권리와 책무

가. 권리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의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고, 보증·용자 및 공제 등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

조합원은 보증·용자 등 조합과 거래과정에서 발생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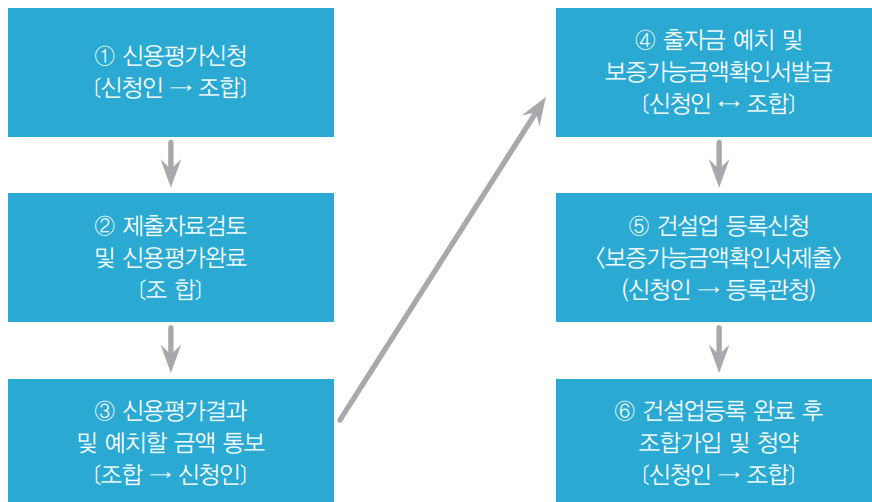
조합원은 정관, 규정 및 기타 각종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하여 통지 및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조합원의 혜택

- 가. 조합원이 납부하는 수수료 및 이자 등의 각종 수익금은 결산시 출자지분액에 반영되어 조합원에게 환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나.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거래지분가)의 26배의 범위내에서 각종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조합원의 업무거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기간(3년) 동안에 한번의 약정체결로 업무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도거래채무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규조합원의 용자이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78호(2008년 2월 27일)]에 의거 신용운영자금에 한해 조합에 예치(출자)한 후 2년 경과 시 용자가 가능합니다.
- 라. 조합원이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용자업무 및 공제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 용자금에 대한 이자납부는 자동이체(CMS)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바. 보증, 용자이용 합계잔액(당해 발급분 포함)이 출자지분액의 1배 이내인 경우에는 건당 최저수수료인 3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금액이 건당 1백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인 경우 입찰보증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연 0.8% (계약보증)와 0.6%(하자보수보증)이며, 이때 최저수수료는 6천원입니다.
- 아. 기계설비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에 무상으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I. 가입절차

1. 조합가입 업무 흐름도



| 참고사항 |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①~⑥의 절차에 의하며, 그 외 업종은 ⑥의 절차에 의해 조합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조합 소정서식은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 「업무서식」에서 관련 업무별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의 작성, 변경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도장을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 조합에 제출하시는 서류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부동산 등),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자료이어야 합니다.

2. 신용평가 신청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하여 자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아야만 신용등급별 예치금액이 정해지고, 동 예치금액을 예치함과 동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 신청 |

조합홈페이지 ⇒ 조합업무안내 ⇒ 신용평가업무 참조

3. 출자금 예치 및 제출서류

| 출자금 예치 |

앞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별 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① 예치서(조합서식)
-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조합서식)
-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제외) 1부(3개월 이내)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4. 조합가입 및 청약(양수)

조합원 가입자격은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예치한 예치금을 출자전환함과 동시에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으로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 | |
|--------------------------------|--------------------------------|
| ① 청약서(조합서식) | ② 가입원(조합서식) |
| ③ 출자증권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증서(조합서식)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제외)[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⑦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⑧ 정관(개인사업자는 제외) 사본 각 1부 |
- ※ 제출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된 서류는 제외)와 중복된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Ⅲ.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확인서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1년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취하시어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및 내용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건설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 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 ※ 이미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은 새로 받지 않아도 되며, 기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예치(출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예치하면 됩니다.
- 또한, 조합원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24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시행)
 - ※ 조합원이 아닌 자가 타 건설업종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2. 발급신청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 예치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

3. 예치(출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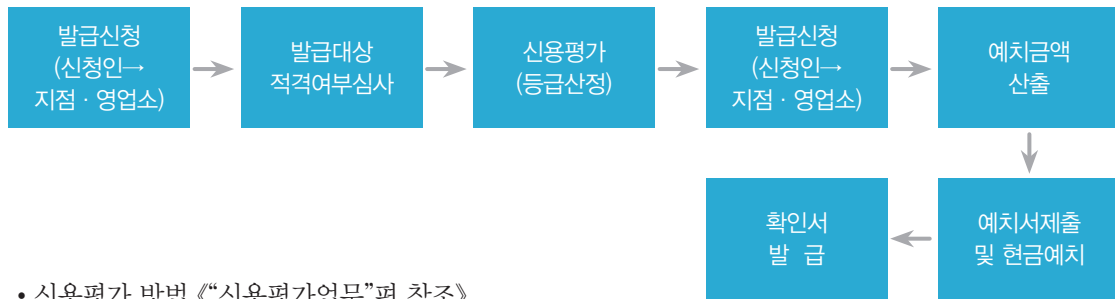
-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어야 하며,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 예치(출자) 대상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법정자본금 2억원~24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신용등급별 최소예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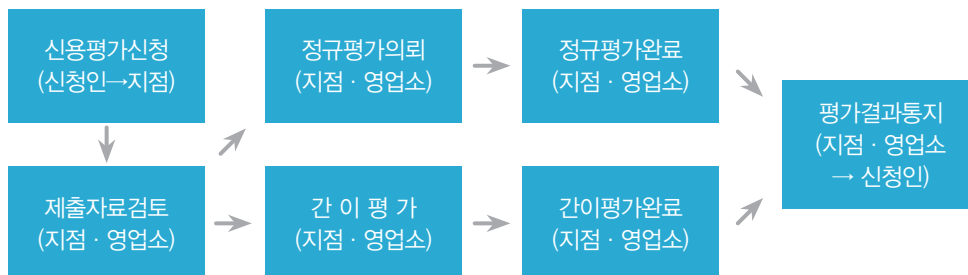
구분	업종	법정자본금	신용등급별 최소예치좌수		
			AAA~ CCC등급	CC등급	C등급
종합 건설 업	토목공사업	7억원(법인)	150좌	167좌	188좌
	조경공사업	14억원(개인)	300좌	334좌	375좌
	건축공사업	5억원(법인)	108좌	120좌	134좌
		10억원(개인)	215좌	239좌	268좌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법인)	258좌	286좌	322좌
		24억원(개인)	515좌	572좌	643좌
전문 건설 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억원 (법인 및 개인)	43좌	48좌	54좌
	실내건축공사업 외 14개업종	2억원 (법인 및 개인)	43좌	48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원 (법인 및 개인)	65좌	72좌	81좌
	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식도설치공사업	3억원(법인)	65좌	72좌	81좌
		6억원(개인)	129좌	143좌	161좌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10억원(법인)	215좌	239좌	268좌
		20억원(개인)	429좌	477좌	536좌

※ 법정예치금액 = 신용등급별 최소예치좌수 × 좌당지분가(938,310원)

4. 확인서 발급절차



- 신용평가 방법 《“신용평가업무”편 참조》
- 신용평가 절차 요약



5. 발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조합이 담보권 실행, 예치(출자)금 또는 출자증권의 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 예치기준에 미달한 때
- 건설업을 양도한 때(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을 때
- 조합원의 권리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신용등급이 변동되어 출자금 예치기준에 미달한 때
- 기타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유효기간 만료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됩니다. 단, 타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및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유효기간 종료시점에 맞추어 조합에서 동 확인서를 자동발급하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및 등록관청 방문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7. 해지

-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상기 “5.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가 해지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 효력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① 조합이 담보권 실행, 예치(출자)금 또는 출자증권의 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예치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 ② 신용등급이 변동되어 출자금 예치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 확인서가 해지된 경우 조합은 이를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8.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건설업 등록 절차

- 건설업 등록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등 건설업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한설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영업소)에서 발급[각 지점(영업소) 전화 번호는 조합업무안내책자 맨 뒷페이지 참조]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설물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시설장비 보유업종인 경우)
- 수입증지 첨부 : 20,000원(업종별)

• 처리기간 : 10일 정도

• 면허관청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실사 → 등록처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국민주택채권(법정자본금의 2/1000)구입 및 면허세(18,000원 이상) 납부]

※ 문의처

- 시·도·구청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관리과 가스시설시공업1종 - 지역경제과, 산업과 (면허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리조합 해당 지점(영업소)으로 문의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1. 건설업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날인(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하고, 해당 구청 수입증지 업종별 20,000원 첨부 •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모두 기재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 건설업 양도 시에는 「건설업양도신고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의 증자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합자회사일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표시
3. 대표자 및 임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임원(감사 포함)은 신원조회대상이므로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자본금 관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전문 진단기관이나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직전회계연도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확인)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기술자 보유 현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을 보유현황표 순서대로 첨부 • 기술인력 상근 근로 증빙서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한국기술인협회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중 택1)
6. 시설 및 장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0에 해당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장비현황 - 장비등록원부(장비별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장비별 사진 2매(전면·후면)

※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조합업무관련 ‘질의회신’

Q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설비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의 유효기간이 2014년 8월 30일로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완료 전에 갱신을 해야하는 것인지, 갱신을 해야 하는 거면 갱신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매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조합에서는 발급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대하여 유효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동 확인서를 자동발급하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있어 조합 및 등록관청 방문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동 확인서의 발급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자동발급하여 전자적으로 통지되며, 유효기간 종료시점(자동발급일)에 우리조합 홈페이지 “발급조회/공시 → 보증가능금액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증서 발급 내역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보증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조합 홈페이지 → 온라인지점 → 영업정보서

비스 → 화면상의 “보증이용명세” → 보증구분(선택) 을 이용하여 보증서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술자자격증 종류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유지를 위한 기술자자격증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전문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별표 2에 의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직종과 자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합 홈페이지 좌측의 메뉴, “자료실 → 창업 및 건설업등록 안내 → 전문 건설업이란? → 업종별 등록기준 → 건설기술자인정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을 참고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선금금 공동관리

선금금 반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장 협력사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선금금의 일부를 공동관리계좌로 운영 중인데, 조합에서는 선금금 반환을 기성율 20%이상일 때 공동관리 금액의 50%, 기성율 50% 이상일 때, 공동관리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반환 시 해당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 될 경우, 당 현장 내 공사 수행 시 자금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Risk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력사에서 공동관리 중인 선금 인출 요청 시, 당 현장에서 확인된 월별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50% 반환이 아닌 일부만 반환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A 귀사에서 인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조합에서는 자체내규인 “선급금공동관리 지침”에 의거 기성률 20% 이상인 경우 공동관리금액의 50%를, 기성률 50%이상인 경우 공동관리금액 전액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공동관리위탁자)의 일부반환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현장의 월별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수시로 일부반환이 가능하려면 반환시마다 질권설정된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재차 질권설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정은 이해하오나 원칙적으로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공동관리금액의 일부 반환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업회생 중인 기업에 대한 보증증권 발급가능유무

1. 기업회생에 들어간 기업의 보증증권 발급이 가능한지요? 법원의 설명으로는 회생개시 후 보증서 발급이 어려우나,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거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한 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회생기업이기에 발급 심사가 더 어려워 지는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보증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출자지분 회수가 가능한지요?

A 질의 1. 귀사가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 인가시 법원으로 부터 조합과의 보증 업무 거래결정(허가) 받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 업무 일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채권, 채무가 동결되며 처분금지되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 회수 전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Q 대표자 등 약정연대보증인 변경시 절차

대표자 등 약정연대보증인 변경 시 조합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A 첫째, 출자주명부기재사항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용평가 재평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합과 약정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융자금을 이용중인 경우 융자금 대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계약보증서 해제

계약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약보증잔액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제처리 해야 하는지요?

A 계약보증은 보증기간이 경과되어도 자동 해제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①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② 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③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④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 ⑤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때(2011.11.25 기준으로 이전 발급건은 소멸시효 5년 적용, 이후 발급 건은 소멸시효 2년 적용하고 보증기간종료일로부터 계산)

보증기간이 지나 준공처리된 공사임에도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증내용을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Q 영업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설명

영업배상 책임공제에서 ① 대위권포기 특별약관(10% 할증), ② 교차책임특별약관(30%할증), ③ 발주자미필적 특별약관(20%할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1)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적 부담자가 발생하는데, 특약 선택 시 보험금지급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교차책임특별약관

조합원사 및 하수급사 전체를 공동피공제자로 지정할 때 피공제자 사이에발생된배상책임은 보통 약관상 면책인데,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발주자미필적 특별약관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독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